

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8월 20일 제 1741호 · 주간제 34회 · 통권 12월 3000호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8/ 20 통권 1741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1)
-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임
- 12월 결산법인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통신요금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이고, 단말기 할부금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요소>

개념, 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개념	회사와 종속적 고용관계하에 지휘·명령 받으면서 업무수행	독립적 관계로 일하며 지휘·명령 없음
업무시간	회사가 정한 시간에 근무, 근태관리	업무시간을 업무자가 결정, 시간관리 없음
업무장소	회사가 정한 장소에서 근무	업무장소를 업무자가 결정
업무방법	회사가 제공하는 업무방법	본인이 제공하는 장비·방법 적용
성과보상	고정급(고정월급과 상여급)	실적에 연동되는 성과변동보수
계약서류	종속고용 근로계약서	위임, 도급, 용역수탁계약서
적용법률	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민법, 상법
손해책임	업무상 대외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부담	각자가 일으킨 문제는 개인이 민형사 등 전적인 책임 부담
4대보험	근로자로 분류, 직장가입자 분류	사업자로 분류, 지역가입자 분류
급여방법	매월 고정급여 + 성과상여급 가능 연봉 + 퇴직시 급여(퇴직금)	고정급여 없고 업무건별 실적보수 퇴직시 급여나, 퇴직금 없음
원천징수	매월 근로소득원천징수 (대부분 근로소득만 있음)	사업소득원천징수(3.3%) + 스스로 종합소득신고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1호 / 주간 34호

2025. 8. 20.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요소	표지
CEO의 경영산책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종업원(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급여 회계처리 문의 -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임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내년부터 달라지는 비과세종합저축	9 10
직장인 Survival	직장 내 의사소통을 잘하는 5가지 방법	11
최신 판례 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 -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임(상증법§41의3②(1)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상증법§41의3①을 적용) (기준법규재산-173, 2024.10.22)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 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통신요금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이고, 단말기 할부금할인은 대리점의 에누리임	12
세무정보	- 12월 결산법인인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15 21 25 38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20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 비교(1)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배경>

최근 상법 개정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 개혁을 정부, 투자자, 기업과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2023)은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보완하며, 각국의 제도 평가와 개선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팩트북은 기업지배구조에 관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신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국제적 모범 사례 이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이하 “팩트북”)을 살펴 보기로 한다.

<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2023*) >

* OECD (2023),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20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d912314-en>, pp. 4-10. 분석 요약함.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Corporate Governance Factbook)은 각국의 제도적, 법률적, 규제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신의 사실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 관행의 구현을 지원한다. 정책 입안자와 규제 당국은 팩트북을 사용하여 자신의 프레임워크를 다른 국가의 프레임워크와 비교하거나 채택된 특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각 국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이해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와 분석가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팩트북의 핵심 정보는 OECD 주제 검토에서 도출된, 이사회 관행(보수 포함), 기관 투자자의 역할, 특수 관계자 거래 및 소액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원 지명 및 선출, 감독 및 집행, 리스크 관리 및 감사 프레임워크, 회사 그룹 등 주요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각 국가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추가 섹션에서는 소유권 패턴, 증권 거래소 및 그 시장 활동에 대한 정보, 제도 및 규제 환경 등 자본 시장 환경에 대해 다룬다.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은 전 세계 49개 관할지역의 제도적, 법적, 규제적 기업지배구조 프레임워크에 대한 포괄적이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OECD 기업지배구조 팩트북(2023)은 2022년 말까지 모든 이슈 영역에 걸쳐 제정된 조항을 다루고 있으며, 2023년 개정된 G20/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 따라 풍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이사회 책임, ESG 등급 및 지수 제공자에 대한 규제에 관한 새로운 섹션이 추가되었다. 팩트북은 기업 지배구조 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는 49개의 관할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에 기초하였다.

팩트북은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요약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Global markets, corporate ownership and sustainability

기업 지배구조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이 정책이 적용될 소유권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 이해가 필요하다. 전 세계에 약 44,000개의 상장 기업이 있는 가운데, 2017년 84조 달러에서 2022년 말 글로벌 시가총액은 98조 달러에 달하고 있다.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상장 기업의 기관 투자자 소유 비율 증가, 상장 기업 수 및 기업공개(IPO)에서 아시아 시장을 선도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다. 2차 공모(SPO)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 자금 조달 비율 증가, 그리고 비금융 기업 회사채 발행의 장기 성장 추세(2021-22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지만)에 있다.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제도적, 법률적, 규제적 프레임워크의 품질은 G20/OECD 원칙을 이행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독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2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여전히 우선 과제로 남아 있으며 2021-22년에 팩트북

관할권의 70% 이상에서 시행되었음을 강조한다. 기업 지배구조 코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는 기업지배구조 코드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구가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관할 국가의 3분의 2 이상이 기업들이 이러한 코드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The rights of shareholders and key ownership functions

G20/OECD 원칙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보호하고 촉진하며 모든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 복수 의결권 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복수의결권제도가 도입 운영되고 있음.

이는 '하나의 주식 1표' 비례 원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를 위한 프레임워크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주기적 및 수시 공시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8개의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거나 권장되며, 일반적으로 관련 이사의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미참여* 또는 감사위원회 또는 사외이사의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상법에 따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의 이사회 승인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심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 실무적으로 특별 이해관계인을 명확히 하고 회의록에 “특별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 및 심의에 참여하지 않음”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The corporate board of directors

G20/OECD 원칙은 기업 지배구조 프레임워크가 이사회의 전략적 지침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4장에서는 이사회 구조, 이사회 독립성 및 이사회 수준 위원회,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위원회의 설립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거나 권고하는 국가는 드물다*. 외부 감사와 관련하여 외부 감사인을 임명 및/또는 승인하는 주주의 주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주주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사회의 참여도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다.

* 2023년 ‘ OECD Corporate Governance Factbook ’ 조사 발간 시점인 2023년상황으로 이를 고려하여 독자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종업원(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급여 회계처리 문의

Q 종업원(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급여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매출 발생 시 일반할인, 직원할인 금액 각 할인금액만큼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차감되어 수금됩니다.
 ex. 매출 100만원 - 일반할인 20만원 - 직원할인 10만원 = 외상매출금 70만원 에 대해 수금
 해당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해 급여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차변) 급여 10만원 (대변) 외상매출금 10만원 으로 작성 시 10만원만큼 외상매출금이 이중으로 차감이 됩니다.
 급여 10만원 비용 설정하기 위해 해당 금액만큼 당사 이익으로 보고 대변에 이익 계정으로 작성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법인세법 시행령 11조에 의거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A 1. 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할인된 금액을 매출로 회계처리하고 외상매출금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임직원에 대한 할인액만큼은 세무상으로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기업에서 개최하는 스타트업 협업 기업 선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본선진출을 함으로써 지원금 3000만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협업에 사용되는 비품(컴퓨터 등) 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시 지급된 3000만원을 잡이익 처리 하였는데, 더욱 알맞은 회계처리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A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협업기업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지원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식비 소급 지급시 비과세 가능 여부

- Q** 안녕하세요.
중식비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 상향된 것에 대하여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7월에 1~6월분의 중식비 인상금액 10만원*6개월 = 60만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면 해당 금액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A** 식대 비과세항목은 월별금액 기준이므로 일괄 소급적용은 안되며, 소급 적용하려면 상반기 매월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IPP 연계 인턴 사원 실습비 지급 계정 문의

- Q** IPP 연계로 고용한 인턴 사원에게 실습지원금을 회사에서 선지급하고 실습이 종료되는 시점에 학교로부터 실습지원금 금액을 payback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습비를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도 문제 없는지, 급여 계정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A** 실습지원금의 최종 부담자는 귀사가 아니고 학교이므로 선지급시 귀사의 비용(급여)로 처리하면 안되며, 가계정으로 처리하고 추후 payback 시점에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거마비는 비과세소득임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사외이사나 비상근임원 등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비용을 흔히 거마비라고 하는데, 실무상 이들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처리를 할 것인가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근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등의 제수당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근임원 등에게 회의참석차 지급하는 실비정도의 체재비 등은 비과세임

임원중에는 항시 상주하지 않고 근무가능시간의 일부나 특정업무에 대하여만 실무적으로 간여하는 비상근임원이나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대주주와 관련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회사 정관에 의해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곤 한다. 이때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대がい면 당연히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면 된다.

하지만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면 된다.

세법상 임원은 등기여부 상관없이 직무에 실질적 종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일반적으로 임원이라 하면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회사의 정관이나 지급규정 등에 의한 급여나 상여금의 지급은 인건비로서 손급산입하며, 실비변상적 급여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비과세 처리하고

있다.

여기서의 임원은 법인의 이사회구성원은 물론 감사 및 이사·감사 등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등기·비등기여부, 법정임원 여부, 상근·비상근여부 또는 직책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그 직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이면 회사내부나 외부의 구분없이 이사·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는 모두 임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라도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면 비과세할 수가 있다(서이 46012 - 11401, 2002. 7.19 ; 법인 22601 - 1121, 1991. 6. 3).

그러나 실비변상적 급여라도 당해 금액의 적정여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만약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이상이라면 그 초과금액은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라 함은 합리적 기준하에서 통용된 실비로서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재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이사회 등 참석의 경우 왕복차비와 식사대 정도의 실비로서 10만원~15만원 내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인 자격없이 그 계약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그 비상근임원이나 사외이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차 방문시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 등의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면 된다.

◇ 비상근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의 세무처리 ◇

구분	세무상처리	비고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따른 보수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일수나 기여도에 비해 너무 과하거나 비상근임원이 대주주나 친인척 등이면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상여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처리(손금불산입)
퇴직금 지급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한 지급기준 범위내의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	지급기준 초과지급은 배당소득으로 손금불산입함
주주총회나 이사회 참석에 따른 거마비	실비변상 정도의 체재비, 교통비(항공료 등)는 비과세처리	초과과다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처리
근무와는 별도로 고문, 감사료 지급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처리(3.3%로 원천징수)	실무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함. 그러나 고용관계 없는 경우는 일시적 용역으로 기타소득으로도 처리함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주요 내용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중대표 소송 허용

주식보유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0.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 2020년 12월 상법 개정 준용 확대



대주주 요건

• 출국일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벤처기업		기타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지분율	시가 총액
2018년 3월 31일 이후	1%	25억원	2%	25억원	4%	10억원	4%	40억원	4%	25억원
2018년 4월 1일 이후	1%	15억원	2%	15억원	4%	10억원	4%	40억원	4%	15억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	10억원	2%	10억원	4%	1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2024년 1월 1일 이후	1%	50억원	2%	50억원	4%	50억원	4%	40억원	4%	10억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비과세종합저축

	현행	개정안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납입한도	5000만원	
적용기간	2025년 12월 31일	2028년 12월 31일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구분	주요 내용	세부사항·사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휴 국유지·노후 청·관사 복합개발	2035년까지 계획된 2만호 조기 공급+신규 1만 5000호 발굴
사회적경제·첨단산업 지원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2.5% → 1% - AI·친환경차·신재생에너지: 2.5% → 1.5%
매각 절차 투명성 강화	대규모 국유재산 처분 규제	- 500억 ↑: 국무회의·국회 사전보고 - 100억 ↑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승인
유휴 국유지 개장	주민 편의 공간 활용	개발전까지 주차장·편의공간 개방
물납증권 가치 보호	캠코 수탁·관리권한 강화	회계장부 열람, 주주 제안, 경영진 면담 등 권한 적극 행사, 횡령·배임·일감몰아주기·저가 매각 등 발견 시 개선 요구 → 불이행 시 법적 조치·경영진 교체



직장내 의사소통을 잘하는 5가지 방법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신뢰를 얻습니다

1. 말하기 전에 '목적'을 먼저 정하세요

그냥 말을 시작하면 메시지가 산만해집니다. 전달하고 싶은 핵심이 '보고' 인지, '요청' 인지, '의견 교환' 인지 먼저 정하고 시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현을 조율하세요

같은 말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전해야 합니다. 상사에겐 결과 중심, 동료에겐 과정과 협력 포인트 중심, 후배에겐 방향과 팁 중심으로 말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3. 메모와 요약으로 '이해의 간극'을 줄이세요

회의나 대화 후, 주요 내용을 메모하거나 간단히 요약해서 공유하면 기억 차이로 생기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해했다'와 '같이 이해했다'는 전혀 다릅니다.

4. 피드백은 '행동'에, 칭찬은 '사람'에 하세요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행동이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할 때 그 사람의 태도나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이렇게 하면 신뢰와 동기부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5. 말보다 먼저 '듣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질문하는 태도는 '당신의 말을 존중한다'는 신호입니다. 직장 내 의사소통의 절반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통신요금할인액은 사업자의 예누리이고, 단말기 할부금할인은 대리점의 예누리임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예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예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예누리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국조-560, 2024.11.18

질 의

- 단말기 판매 대리점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고,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 1) 질의법인이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질의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대리점의 예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이 질의법인과 대리점 중 누구의 예누리에 해당하는지

회 신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이하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이하 "대리점")이 고객에게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1.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예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예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예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환일 전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처분비율 판단함

사전법규법인-156, 2025.02.12

질 의

-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완전모회사가 교환일 전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대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지분의 연속성 위반 여부" 사후관리 시 주식처분 비율 계산 방법

회 신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 2025. 1. 24.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취득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완전모회사가 주식 교환일 2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완전자회사의 주식에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2안)입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한 주식 수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임 (상증법§41의3②(1)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상증법§41의3①을 적용)

기준법규재산-173, 2024.10.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있어,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규부가-508, 2024.08.22

■ 질 의

- 상증법 41의3①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
 -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로 규정(상증법 41의3①(1), 상증법 22②, 상증령 19②)
-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는 양도인(증여자)과 양수인(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속하는 최대주주등 집단 내 어느 1인과 양수인(수증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
 - 양수인을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식등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질 의

- 만기가 2년인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만기일 전일까지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것이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16②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 동법동조 제1항에 따라 이미 소득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 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만8800여 납세자에 대해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한다. 이들 기업의 납부기한은 11월 3일까지다.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곳,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만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4055곳,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중견기업 187곳을 선정했다.

이밖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은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 국세청에 10월 10일의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공식건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0월 10일(금)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11일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에 들어가 3일에 불과한 신고·납부 일만으로는 사업자와 세무사 간 자료 전달 및 확인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천세 신고·납부일이 3일에 불과하여 2천6백만여건에 달하는 원천세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홈택스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신고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금융기관 납부 창구의 혼잡까지 예상되어 정확한 원천세 신고·납부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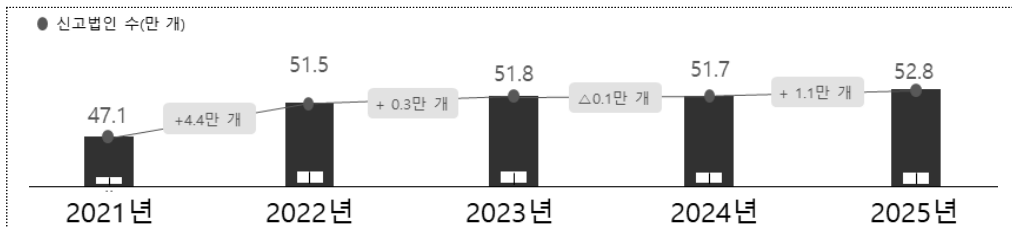
세무사회는 이번 원천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요청은 공휴일(2일)과 추석연휴(3일) 일수에 해당하는 5일을 연장하여 10월 17일(금)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청이라면서, 국민과 기업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정당국이 국민과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은 9.1.(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세요

- 국세청, 2025. 7

- (신고개요) 12월 결산법인은 9월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제도변경)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가결산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됩니다.
- 그 외 법인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②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52만 8천 개 법인으로 지난해 51만 7천 개 보다 1만 1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현황>



- (신고편의) 8월 1일부터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화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자금부

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

분할납부 기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올해는 11.3.까지) ▶ 일반기업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올해는 10.1.까지)
-------------	--

* (예) 납부할 세액이 1,700만원인 중소기업의 경우 : 9.1.까지 1,000만원 납부, 11.3.까지 700만원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0만원인 일반기업의 경우 : 9.1.까지 2,500만원 납부, 10.1.까지 2,500만원 납부

- (세정지원)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800여 납세자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폭우, 대형산불, 항공기 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9,600여 중소기업과 내수침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24,900여 곳, 관세피해 수출기업이 그 대상이며,
- 수출 기업의 경우 4,055개 중소기업 외에도 경제 기여도는 높으나 세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187개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 대상법인은 홈택스 신고 후 납부서 출력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되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 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 홈택스 경로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 /내역조회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납부의무 면제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해당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

- (중간예납 방식)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 상반기 ('25년 1월 ~ 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 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면제 대상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방식 : 직전 사업연도 확정신고 법인세의 1/2을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text{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times 50\%$$

② 가결산 방식 : 상반기('25.1. ~ '25.6.)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

$$\text{중간예납세액} = \left[\begin{array}{l} \text{상반기 과세표준} \times 2 \\ \text{[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 \ominus \text{손금)} \\ \text{-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end{array} \right] \times \text{세율} \times \frac{6}{12} - \begin{array}{l} \text{상반기} \\ \cdot \text{공제} \cdot \text{감면세액} \\ \cdot \text{원천징수세액} \\ \cdot \text{수시부과세액} \end{array}$$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 홈택스 » 납부·고지·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미리채움·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개요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폭우·산불 등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②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③ (석유화학·철강·건설 중소기업) 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 선정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 선정기준

구분	선정기준	법인수
① 특별재난지역	·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4,135
	·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4,593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	945

<p>② 수출 중소·중견기업</p>	<p>·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할 것 ① '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②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③ 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④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p>	<p>4,242</p>
<p>③ 석유화학·철강·건설</p>	<p>·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3년 대비 '24년 매출이 감소한 법인</p>	<p>24,968</p>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9월 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9월 1일에서 11월 3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3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분할납부 시기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분할납부 시기	'25년 10월 1일 → '25년 12월 1일	'25년 11월 3일 → '26년 1월 5일

참고 4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

□ 중간예납 세정지원 현황

- 지원대상 법인의 중간예납 규모는 8,084억원(전년대비 1,840억원↑)이며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세액이 4,088억원으로 50.6% 차지

지원구분	법인수	'24년 중간예납실적	'25년 예상 중간예납세액*
합계	38,883개	6,244억원 (100.0%)	8,084억원 (100.0%)
① 특별재난 지역	소계	792억원 (12.7%)	1,042억원 (12.9%)
	집중호우	333억원 (5.3%)	577억원 (7.1%)
	대형산불	413억원 (6.6%)	411억원 (5.12%)
	제주항공	945개	46억원 (0.8%)

② 수출 기업	소 계	4,242개	2,499억원 (40.0%)	2,954억원 (36.5%)
	중소기업	4,055개	1,698억원 (27.2%)	1,688억원 (20.9%)
	중견기업	187개	801억원 (12.8%)	1,266억원 (15.7%)
③ 석유화학· 철강·건설	소 계	24,968개	2,953억원 (47.3%)	4,088억원 (50.6%)
	건설업	21,796개	2,080억원 (33.3%)	3,007억원 (37.2%)
	철강	1,258개	323억원 (5.2%)	372억원 (4.6%)
	석유화학	1,914개	550억원 (8.8%)	709억원 (8.8%)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예상세액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8일(금)	8월 11일(월)	8월 12일(화)	8월 13일(수)
미 달 러 (USD)	1384.20	1386.00	1388.30	1390.20
일 본 엔 (JPY)	942.50	938.07	936.74	940.72
영 국 파 운 드 (GBP)	1861.47	1863.20	1864.97	1876.91
캐 나 다 달 러 (CAD)	1007.64	1007.67	1007.77	1009.73
홍 콩 달 러 (HKD)	176.34	176.57	176.86	177.12
위 안 화 (CNH)	192.97	193.00	193.05	193.24
유 로 화 (EUR)	1615.71	1614.20	1612.44	1623.41
호 주 달 러 (AUD)	903.26	903.60	904.41	907.80
싱 가 폴 달 러 (SGD)	1079.13	1078.22	1078.75	1083.4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6.92	326.89	327.93	328.57

이번 신고부터는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외거래도 신고안내를 실시합니다

- 국세청, 2025. 8

- 개요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1.(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¹⁾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²⁾는 제외)가 신고대상입니다.
 - 1)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rea Over-The-Counter)
 - 2) 지분을 4% 미만 &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보유한 주주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

- ▶ 지분을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을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

- (안내대상)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하여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도 신고안내*를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이체)한 경우에 한함.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확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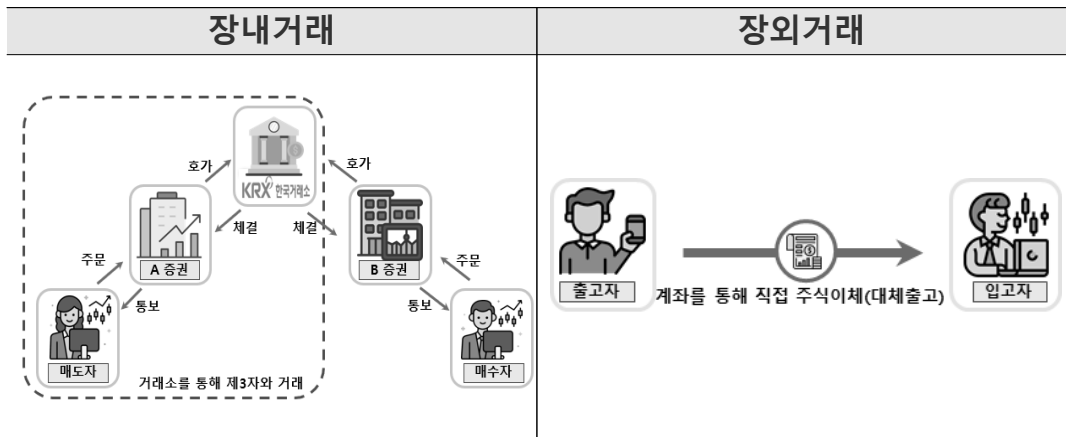
상장구분	거래구분	주주구분	신고 대상	기존 안내	'25년 8월
상장 법인	장내거래	① 대주주	○	○	○
		소액주주	X	-	-
	장외거래	① 대주주	○	○	○
		② 소액주주	○	X	○
비상장 법인	장외거래	③ K-OTC	○	○	○
		④ K-OTC 외	○	X	○

- (안내일정) 8월 5일(화)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

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추가발송(8.12.)할 예정입니다.

- 장외거래 :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 장내거래·장외거래 비교 |



-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25. 3. 4. 출범한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상장주식 거래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만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소액주주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로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신고도움 : 금번부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¹⁾ 대상자를 장외거래자까지 확대²⁾하여 보다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 양도내역 6가지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양도일자, 양도가액, 양도주식수 등)
- 2) (기존)상장주식 대주주·K-OTC시장 주주 → (확대)장외거래한 상장주식 소액주주, 비상장주식 주주

- 또한 주식 거래내역 조회, 서울선택 도우미,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부말씀 : 항상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는 납세자들께 감사드리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여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하는 한편 합리적 세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step.1 양도내역 불러오기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화면에서 2025년 상반기(1월~6월) 거래내역을 “양도내역 불러오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step.2 팝업으로 거래내역 제공

- ➔ ❶ 건수는 한꺼번에 10건, 20건, 100건씩 한 화면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❷ 건별로 선택 후 ❸ 불러오기 클릭
- ➔ 작성한 양도내역은 목록바탕색이 음영처리되오니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tep.3 신고항목(6종)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신고항목 6종(사업자등록번호, 주식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단, 장외거래자의 양도가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 해당 자료는 증권사가 제출한 자료로 신고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양도사실과 다른 경우 사실에 맞게 작성(수정)하시면 됩니다.
- ➔ 그 외 작성항목인 양도물건종류, 세율구분, 주식종류는 <양도물건 종류 세율 선택 도우미>를 활용하셔서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주식 장외거래 관련 주요 문답(Q&A)

Q 1 장외거래란 무엇인가요?

- A. 장외거래란 한국거래소(KRX)가 개설한 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통하지 않은 모든 주식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 거래와 상장주식 거래라도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포함됩니다.

*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 포함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2 시간외매매를 하였는데 장외거래 인가요 ?

A. 시간외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닙니다.

시간외매매는 정규 거래시간 외에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입니다. 즉 정규장외의 시작 전 또는 끝난 후 정해진 시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시간만 다를 뿐 장내거래에 해당합니다.

Q3 상장법인 대주주가 아닌데도 신고대상인가요?

A.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장내 거래한 경우 소액주주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장외거래한 경우는 신고대상입니다

Q4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하나요?

A. 안내문은 신고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고는 거래사실에 맞게 본인이 확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자는 증권사가 제출한 증권계좌간 이체자료*를 기반으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주식 이체시 입력한 이체사유(양도 또는 양도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증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직접 이체(양도)한 거래내역

만일 주식 이체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외 본인계좌로의 이체, 대차거래 등 실제 양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5 주식 장외거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 공인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도우미 서비스 ➔ 4.주식등 거래내역 ➔ 상장주식 소액주주·비상장주식 주주거래 조회

법인세 공제·감면사항

- 국세청, 2025. 8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지원내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75%, 100%) 세액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 등 소득에 대해 5~30%를 세액감면(\$7)
설비투자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12)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대금의 0.15%, 0.3% 0.5%, 세액공제(\$7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10%(중소 20%)세액공제 +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10%(중소 20%)추가공제(\$29의4)(\$29의4)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임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인 자 제외)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영업이익이 발생한 기업이 지급한 것에 한함) 그 경영성과급의 15% 세액공제(\$19)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간 임금감소 총액 × 1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임금 보전액 × 15%를 세액공제 (\$30의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75%, 100%) 세액공제(\$30의4)
최저한세 적용한도 우대	최저한세율을 일반법인에 비해 3~10% 우대

●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

○ 조세특례제한법

구분	지원내용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등에 2025.12.31.까지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8의3)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장부가액의 3% 세액공제(\$8의3)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등 최대 30%(중소4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0~2%(중소25%, 중견 8%) + 국가전략기술 최대 40%(중소50%) 또는 직전년 대비 증가액의 25%(중견 40%,중소 50%) 세액공제(\$10) ○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대한 익금불산입(\$10의2)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M&A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12의3, \$12의4)
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시설투자 금액의 1%, 3%, 10% 기본공제1)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2) 추가공제(\$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성장·원천기술 2% 우대, 국가전략기술 5~6% 우대 2) 국가전략기술 1% 우대 '21년에는 아래의 시설투자세액공제와 선택 적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舊 조특법 \$5) ②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 ③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4) ④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舊 조특법 \$25의5)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공장 지방이전 시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63)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66), 영어조합법인(\$67)의 농어업소득은 100% 및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 ○ 농업회사법인(\$68)의 농업소득은 100%,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연구소 기업에 대하여 3년간 법인세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12의2)
농공단지 등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및 이후 4년간 50% 감면(\$64)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감면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85의6) * 최저한세 적용 배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121의8,9)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 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등에 대해 3년간 100%(50%), 이후 2년간 50%(25%) 감면(\$121의17)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이 직접 법인세를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104의8)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제3자에게 위탁한 물류비 증가액의 3%(중소 5%) 세액공제(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의 10% 한도)(\$104의14)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양도차익 등에 대한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33, \$34, \$38의2,3, \$39, \$40, \$44, \$46, \$47의4, \$52 등)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과세이연 등	○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차익 등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60, \$63의2, \$85의2,7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액(공제기간 : 2020.1.1.~2024.12.31.)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96의3)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99의9)

● 법인세법

구 분	지 원 내 용
재해손실세액공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총자산가액의 20%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상실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58)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 공제(\$57,\$57의2)

● 공제감면 항목별 상세내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 7)
 - 대상 법인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은 중기업까지 포함)
 - 대상 업종



1. 작물재배업
2. 축산업
3. 어업
4. 광업
5. 제조업
6. 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재활용을 포함) 및 환경복원업
7. 건설업
8. 도매 및 소매업
9. 여객운송업
10. 출판업
1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12. 방송업
13. 전기통신업
14.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5. 정보서비스업
16. 연구개발업
17. 광고업
18.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9. 포장 및 충전업
20. 전문디자인업
2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22. 수탁생산업
23. 엔지니어링사업
24. 물류산업
25. 직업기술 관련 학원 및 훈련시설
26.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7. 선박관리업
28. 의료기관 운영사업
29.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업은 제외)
30.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31. 전시산업
32.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3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
34.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3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

36.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37.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38.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9. 사회복지 서비스업
40. 무형재산 임대업
41. 연구개발지원업
42.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도서관 · 사적지 및 유사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 제외)
43. 주택임대관리업
4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45.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46. 임업
47.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48. 자동차임대업

- 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함(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 (농 · 임 · 어 · 광업, 건설 · 운수업, 기타 제조업 등) 80억원 이하 / (도 · 소매업, 출판 · 영상 등) 50억원 이하 등

- 감면내용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도소매/의료업	-	5	10	10
기타업종	-	15	20	30
통관대리 관련 서비스	-	7.5	10	15

* 사업장별로 판단(단, 본점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

- 감면 한도 : 1억원

- 단,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함

업종구분	중기업		소기업	
	수도권	수도권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알뜰주유소	10	15	20	20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감면 대상법인

-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5⑩에 따른 중소기업

- 감면 내용

-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	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 ¹⁾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청년창업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³⁾	그 외			
5년 100% ²⁾	5년 100%	5년 50%	5년 50%	5년 50%	-	5년 50%	5년 50%	5년 50%

- (1) (청년창업)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동일 것
- (2) '18.5.29 이후 창업부터 적용, '18.5.28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3년간 75%, 그 후 2년간 50% 감면
- (3)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4,800만원('22.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18.5.29 이후 창업부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 과세연도 중 수입금액이 연간 기준 8,0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적용('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 S/W개발업 등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추가감면】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가에 따라 25~50% 추가감면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제조업으로 '19년 창업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지속 증가한 경우[('19) 10명 → ('20) 15명 → ('21) 20명]
 - ('19 과세연도) 50% 감면
 - ('20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25% $[50% \times (15-10)/10]$ = 총 75%감면
 - ('21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16.7% $[50% \times (20-15)/15]$ = 총 66.7%감면
- 최소고용인원 미만인 제조업 창업 기업이 고용 증가로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한 경우 [('21) 8명 → ('22) 16명]
 - ('21 과세연도) 50% 감면
 - ('22 과세연도) 50% + 추가감면율 30% $(60% \times 1/2)$ = 총 80% 감면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지원내용 : 다음 공제내용 중 선택한 금액을 세액공제
- 대상법인 : 내국인(거주자 + 내국법인)
- 공제내용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 Min(수입금액 대비 신성장 R&D 비중 × 3배, 10%)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비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5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25%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3개 분야 272개 기술(조특령 별표7)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 7개 분야 62개 기술(조특령 별표7의2)
일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액 = (1) + (2) + (3) (1)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최대 30%*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25% + Min(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중×3배, 15%) (2)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 최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 Min(수입금액 대비 국가전략기술 R&D 중 × 3배, 10%) (3) max (①증가분 방식, ②당기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연도 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한 금액의 25%(중견 40%) ②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의 최대 2%(중견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0%+(매출액 대비 R&D 비중 ×1/2, 최대 2%)

- 세액공제대상비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 연구개발 :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비 및 이용료, 특정연구기관 등에 지출한 기술개발 위탁비
 - 인력개발 :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대학 등 위탁교육훈련비, 직업 훈련기관 위탁훈련비 등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유의사항
 - R&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
 [당해연도 R&D비용 - 직전 3년 평균 R&D비용('13년) → 2년 평균('14년) → 직전연도('15년 이후)] × 25%(중소기업 50%)
 다만, 소급 4년간 R&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2013.1.1.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
 - * 종전에는 조특법§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
- 연구·인력개발비 인건비에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제외
- 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
- 당초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외에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 개발업의 자체연구개발이 추가됨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 * '14.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인건비 공제대상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연구관리직원 제외함
 - * '16.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9의7)

- 감면대상 법인 :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
- 감면 내용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고용인원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
 - * 종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전환되었으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인원 당 일정금액을 공제
 - 고용인원이 감소되지 아니한 경우 대기업 2년, 중소·중견기업 3년 적용

<고용증대 세액공제금액>

(만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근로자 등	1,100	1,200	800	400

*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이상 29세 이하로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 업소 근무 청소년 등을 제외한 근로자

* 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통합고용세액공제 (§ 29의8)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종 전					현 행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3년)</th> <th rowspan="2">중견 (3년)</th> <th rowspan="2">대기업 (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700</td> <td>77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td> <td>1,100</td> <td>1,20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구 분</th> <th colspan="4">공제액 (단위: 만원)</th> </tr> <tr> <th colspan="2">중소 (3년)</th> <th rowspan="2">중견 (3년)</th> <th rowspan="2">대기업 (2년)</th> </tr> <tr> <th>수도권</th> <th>지방</th> </tr> </thead> <tbody> <tr> <td>상시근로자</td> <td>850</td> <td>950</td> <td>450</td> <td>-</td> </tr> <tr> <td>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td> <td>1,450</td> <td>1,550</td> <td>800</td> <td>400</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구 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공제율 (중소 30%, 중견 15%)					* 청년 범위: 15~34세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공제액(중소 1,000, 중견 7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추가공제 - 구분,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 중견 포함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공제율(중소 30%, 중견 15%)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구 분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통합고용 세액공제 ¹⁾ (조특법§29의8)
적용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공제요건				직전년도 대비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증가	
기본 공제	그외 상시	중소	수도권	700만원	850만원
			지방	770만원	950만원
		중견	450만원		
	청년, 장애인, 60세	중소	수도권	1,100만원	1,450만원
			지방	1,200만원(1,300만원 ²⁾)	1,550만원
		중견	800만원(지방은 900만원 ²⁾)		
	대기업		400만원(지방은 500만원 ²⁾)		
	경력단절여성	중소	수도권	-	1,450만원
			지방	-	1,550만원
		중견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추가	정규직, 육아휴직	중소	-	1,300만원	
		중견	-	900만원	
청년나이				15~29세	15~34세
사후관리				• (기본공제)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고용유지 시 2년(대기업 1년) 추가공제 • (추가공제) 전환일·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통합고용만 해당)	

1)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20, '21년 고용증가분에 대해 한시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예시 : 통합고용 & 고용증대 중복 적용 불가)

● 최저한세(조세특례제한법 § 132)

- 최저한세란?
 -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대상 법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포함)
 - ※ 조특법 제72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제91조 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 최저한세 계산구조
 - 최저한세 = max(①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후 세액, 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 전 과세표준 × 최저한세율) + 가산세 등 - 외국납부세액 등
- 최저한세율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3년	'14년 이후
중소기업		8%	8%	7%	7%	7%	7%
일반기업	중소 유예기간 후 1~3년	신설			8%	8%	8%
	중소 유예기간 후 4~5년	신설			9%	9%	9%
	과세표준 100억 이하	13%	11%	10%	10%	10%	10%
	과세표준 1천억 이하			11%	11%	12%	12%
	과세표준 1천억 초과	15%	15%	14%	14%	16%	17%

참고 1.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소비성서비스업

- 수도권 : 서울, 경기, 인천 전지역
- 지식기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
 -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9㉓)
 - 1. 호텔업 및 여관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2. 주점업(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및 관광유희음식점업 제외)

참고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6①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7.6.20 개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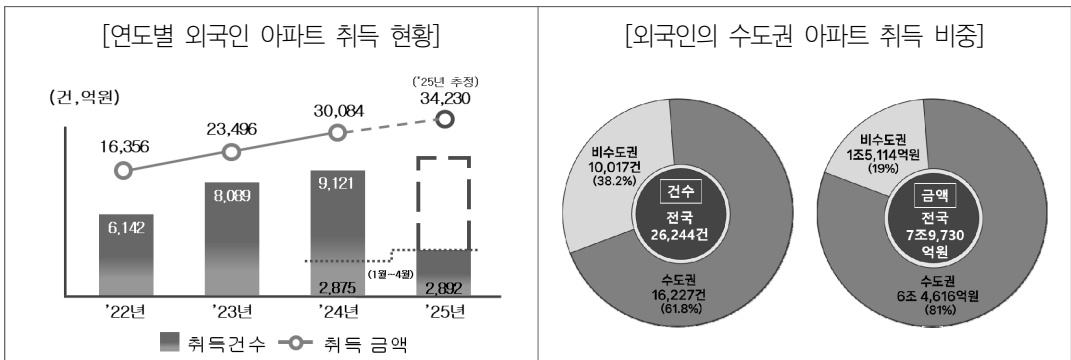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상 생략하였음)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향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 국세청, 2025. 8

1 세무조사 추진배경

-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수도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2년부터 '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6,244채(거래금액 7조 9,730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로는 경기(9,808건, 2조 8,812억원), 서울(3,402건, 2조 7,005억원), 인천(3,017건, 8,799억원) 순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 * 외국인의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 : 건수 61.8%(16,227건), 금액 81%(6조 4,616억원)
- 이 중 서울지역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의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서울 취득 중 강남3구·마용성 비율 : 건수 39.7%(1,983건), 금액 61.4%(1조 9,028억원)
 - ** 물건지와 거소지 불일치 비율 비교 : 전체 평균 39% vs 강남3구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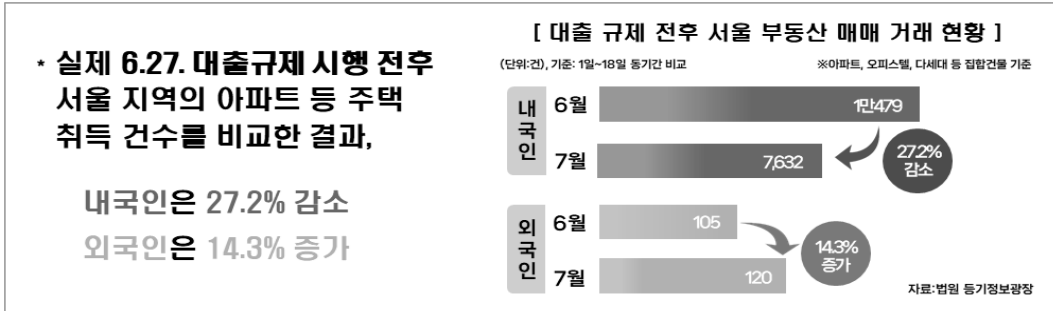


□ 한편,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과 규제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강

력한 대출규제*가 시행중이며,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 6.27 대출규제 주요 내용	①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설정 ②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80%→ 70%) ③ 주택담보대출시 해당 주택에 6개월내 의무 전입 등
----------------------	--

- 그러나,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 그 결과, 상당수 외국인이 자신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고,
 - ①부모·배우자 등으로 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하거나, ②국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탈루하여 취득자금을 마련하였으며,
- 취득한 아파트에 실거주 하지 않고 임대 하는 경우에도, 상당수가 ③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 이들의 탈세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이번 조사대상은,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외국인 탈세자들로 총 49명입니다.

/ 고가 아파트 취득한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대상 /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6명	20명	13명



2

세부 추진내용

① [유형1] 과세 감시망 피해 교묘하게 편법증여 받은 외국인 : 16명

- 첫 번째 대상은 자금추적이 어려운 해외계좌 등을 적극 이용하여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증여 받은 경우입니다.
 - 대다수 국민들은 수십 년을 저축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대 재산가인 부모 등의 도움으로 손쉽게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 등 납세의무는 회피하였습니다.
 - 특히,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
 - 해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나 과세관청의 접근이 국내계좌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조사대상 중에는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 부동산 취득자금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까지도 전액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부모 찬스를 이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② [유형2] 외국인 신분을 이용해 사업소득 빼돌린 외국인 : 20명

- 두 번째 대상은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나 법인으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우입니다.
 - 이들은 국내에서 탈루한 소득을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해외 자금조달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왔고,
 -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외국인이 갖는 사업적 이점을 이용해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 일부는 사주 개인에 대한 대출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25. 7. 3. 가계부채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집중 점검 발표

▶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의 사용이나 개인적 사용시 계약위반으로 즉시 회수조치

③ [유형3] 규제 소홀을 틈타 임대소득 탈루한 외국인 : 13명

- 세 번째 대상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음에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 이들은 임차 여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유인이 없는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남동,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여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하여 감시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이번 조사대상 중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1주택자로 위장하거나,
 - * 1주택자가 조정지역(강남, 용산 등)에서 1채 더 구입시, 취득세는 3%→8%로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가산됨
 - 비거주 외국인임에도 내국인(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주택임대 관련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 거주자로 위장하여 수억 원대의 세액을 감면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조특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①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 소득(법인)세 감면율 : 임대주택 1호 임대시 30%, 2호 이상 임대시 20%

▶ 조특법 제2조 [정의] 제①항 1호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3 향후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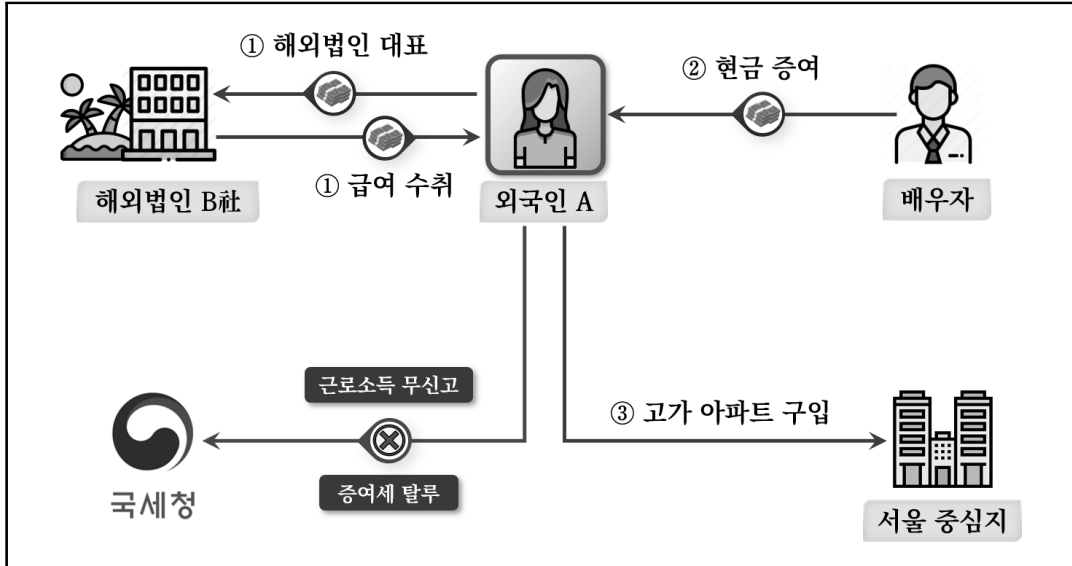
-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포렌식(문서감정) 기법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 조사과정에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국외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자금세탁 등 국외 불법
자금의 유입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국세청에 정보 교환을 요청하는 등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명의위장이나 차명계좌 이용과 같이 악의적으로 세금을 탈
루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등 국내 유관기관은 물론 해외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부동산을 이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일삼는 외국인 탈세자에 대해 강
력히 대처하겠습니다.
 - 특히, 외국인의 자금출처·소득은닉과 관련하여 자국에서의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자
발적 정보교환* 형태로 적극 통보하여, 해당 과세당국에서 세무조사 등 적절한 조치
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상대 국가의 요청 없이도 해당 납세자의 탈세혐의 정보를 해외 과세당국에 제공
 - 아울러, 현재 외국인에게 국내 주택 보유와 관련하여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반하
는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 특례’ 등 실수요자 보호 제도를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적용 배
제하거나, 외국인에게 ‘세대원 전원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현황을 세대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부분을 검토하여 관계기관에 적극 개선 건의하겠습
니다.

사례 1-1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
[편법증여] 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 (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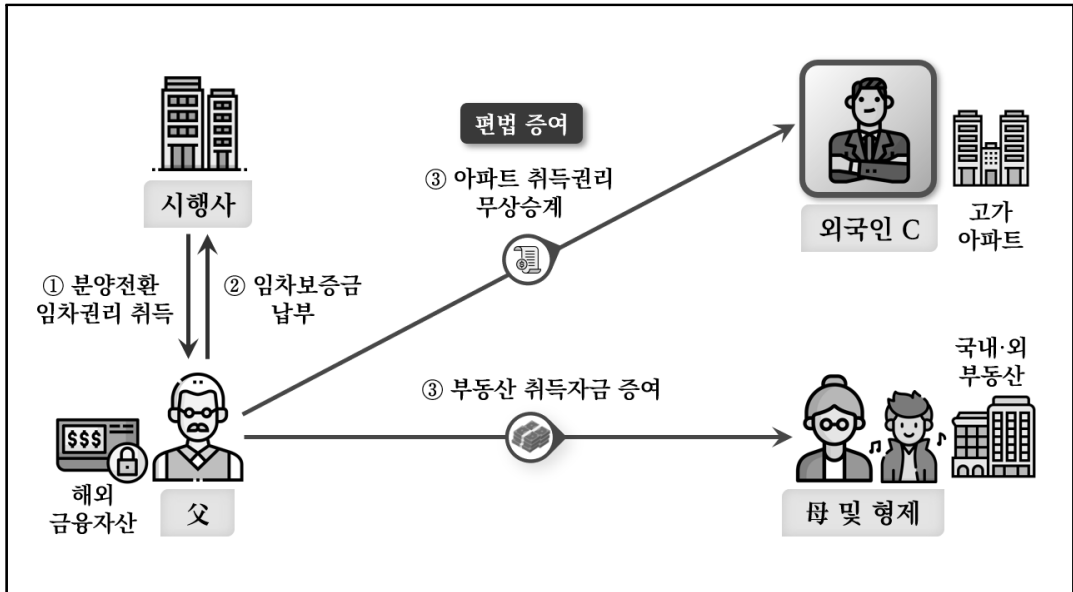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로,
 -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① 이중 해외법인 B社로부터 급여 ○○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무신고
 -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소득세법 제3조)
- ② 또한, 배우자로부터 현금 ○억 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 ③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억 원에 구입

□ 조사 결과

-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배우자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사례 1-2 소득원 없는 외국인이 父로부터 아파트 취득권리를 무상으로 승계한 후 분양전환 [편법증여] 하여 고가 아파트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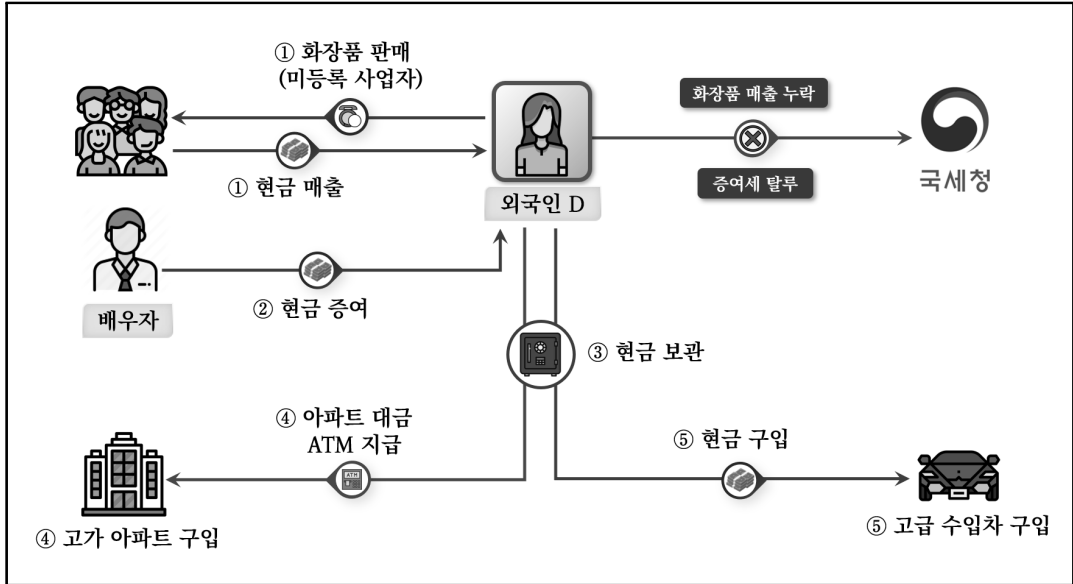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C는 국내 거주자인 父가 취득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 후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하여 〇〇억 원대 고가 아파트 취득
 - * '임대 후 분양'으로 입주 시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별다른 절차 없이 건설사(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서 갱신으로 승계
 - 父가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〇〇억 원대의 임차보증금을 C가 무상으로 취득 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 누락
- 이외에도 C의 父는 배우자에게 〇〇억 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〇〇억 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혐의

□ 조사 방향

-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 추징

사례 2-1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한 현금 매출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을 무신고하
[사업소득 탈루] 고 고가 아파트 및 고급 수입차 구입에 사용 (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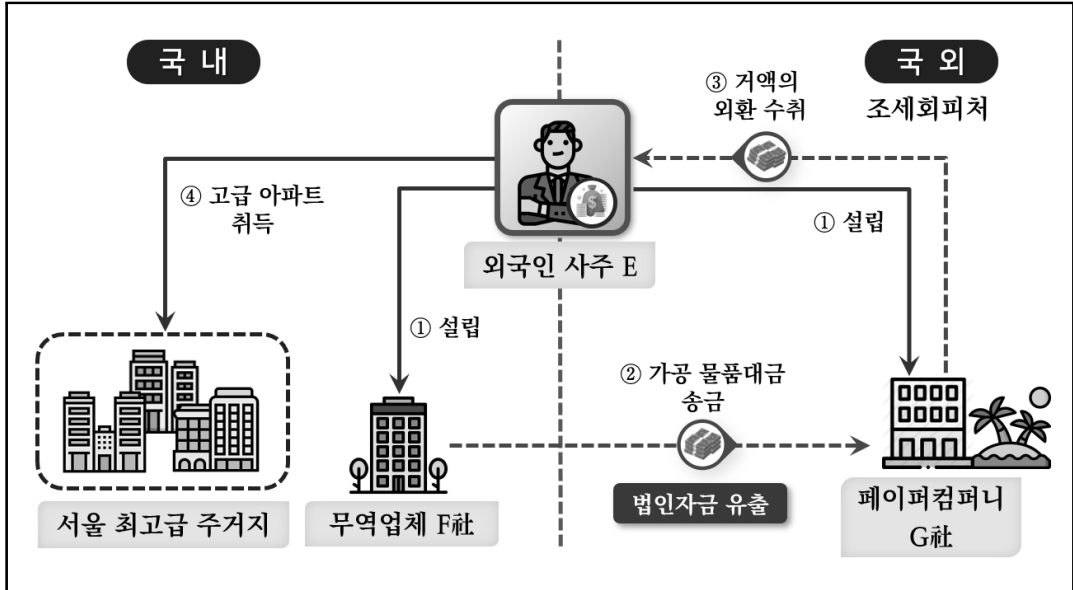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외국인 D는 ①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 지난 5년간 〇〇억 원 현금 매출하며 얻은 소득을 무신고
- ②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〇억 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무신고
- ③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④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〇〇억 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하였으며,
- ⑤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〇억 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결과

- 미등록 사업자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

사례 2-2 외국인 사주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편취한 후 이를 반입
 [사업소득 탈루] 하여 고급 아파트 등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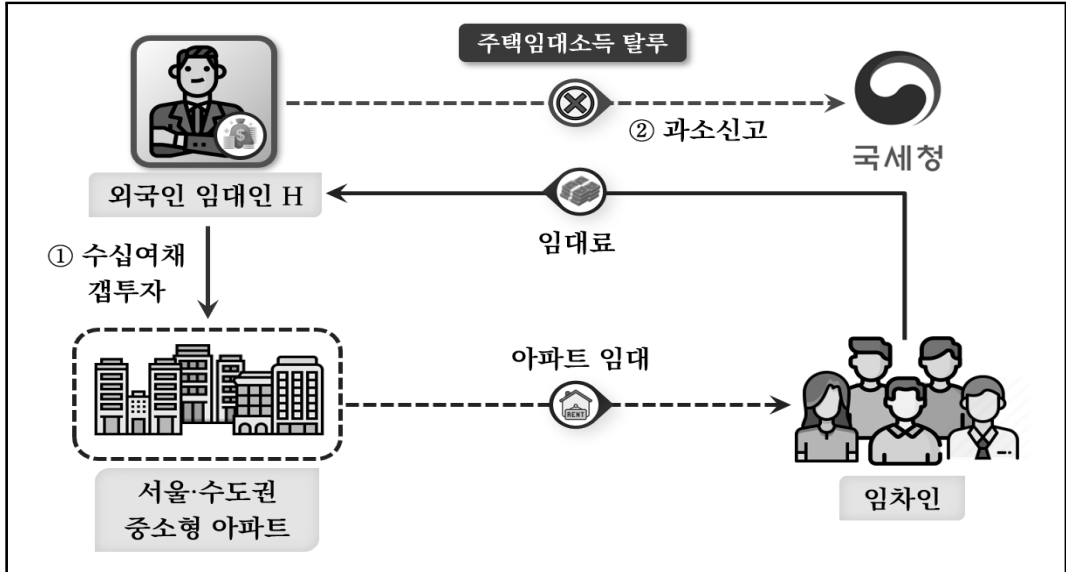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社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社도 소유
 - E는 국내 법인 F社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社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〇〇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

□ 조사 방향

-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 국내법인 F社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社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하여 법인세 등 부과

사례 3-1 서민들이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신택을 갭투자*로 매입하여 임대하고 월세 등
[임대소득 탈루] 임대소득 과소신고 (기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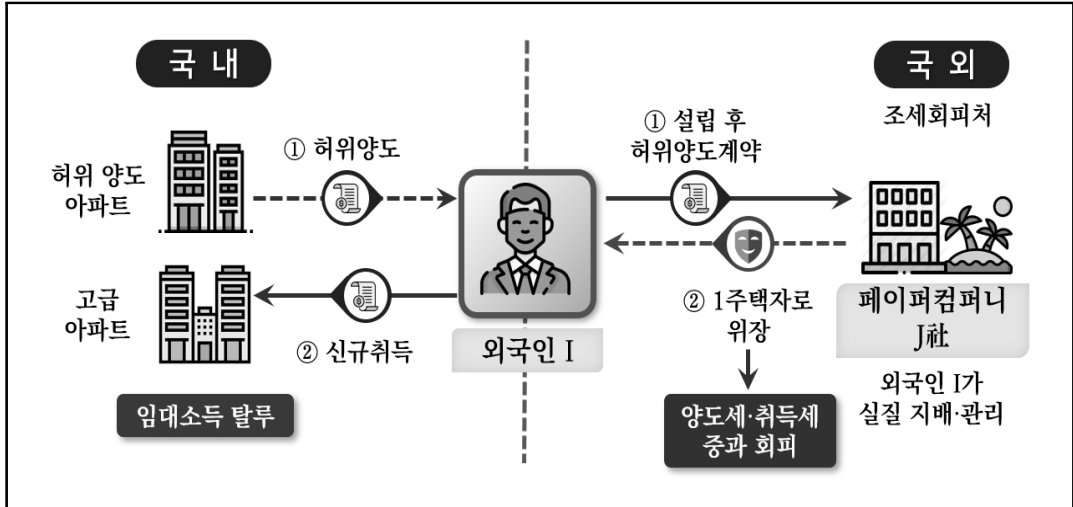
□ 주요 탈루혐의

- 외국인 H는 ①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중소형 아파트 수신택을 갭(gap)투자*를 통해 집중적으로 매입함
 - *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을 때 그 차이(갭)만큼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보증금 미반환 등 서민들에게 피해
- H는 ②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의 주택임대업 등록을 누락하여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내용을 은폐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소득세 탈루

□ 조사 결과

- 주택임대업 미등록 혐의와 주택임대소득 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하여 소득세 추징

사례 3-2 자신이 설립한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양도계약 체결하여 1주택자 [임대소득 탈루] 로 위장한 후 주택임대소득 등 신고누락



□ 주요 탈루혐의

-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社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社에 허위 양도
 - * 1주택자가 조정지역(강남, 용산 등)에서 1채 더 구입시 취득세는 3%→8%로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10% 포인트가 가산됨
- 이후 I는 ○○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억 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
- 또한,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억 원의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

□ 조사 방향

-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 정밀 검증